#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

이 약관은 예금주와 중국농업은행(이하"은행"이라 한다)과의 외화예금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영업시간중 언제나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.

## 제 1 장 공통사항

### 제 1 조 적용범위

- 이 약관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 적용하기로 한다.
  - 1. 외화보통예금
  - 2. 외화당좌예금
  - 3. 외화정기예금

### 제 2 조 지급시기

- ① 외화보통예금 및 외화당좌예금은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.
- ② 외화정기예금은 만기일 이후 또는 거치기간 경과 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. 다만,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 3 조 이자계산

외화예금 이자의 연간일수는 360일(단, GBP는 365일)로 적용하여 예금 통화의 보조단위까지 계산하며 보조단위 미만은 버린다.

### 제 4 조 적용환율 및 수수료

- ①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(신규입금 포함)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하는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고 외화예금의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로 한다. 다만, 미국 달러화외화현금을 대가로 외화예금에 입금할 때 외화현금수수료를 면제한경우로서 입금일부터 7일 이내에 원화를 대가로 출금하는 경우에는대고객 현찰매입률을 적용한다.
- ② 미국달러화 이외의 외화현금을 외화예금에 입금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예금주가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.
- ③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현금으로 인출 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예금주가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.
- ④ 은행은 제 ①②③항과 관련한 적용환율 및 수수료율을 영업장에 게시 토록 하다.

### 제 5 조 약관의 적용

외화예금거래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본 약관에서 정하여지 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금거래기본약관, 은행의 외화예금 관련규정의 순서로 적용된다.

### 제 2 장 외화보통예금

### 제 6 조 이자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매년 4월, 10월 마지막 영업일을 이자결산 기준일로 세하여 익 영업일(이하 "원가일"이라 한다)에 원금에 더한다.
-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처음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날

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은행이 고시한 이율로 셈한다.

## 제 3 장 외화당좌예금

#### 제 7 조 지급특례

은행은 예금주의 수표·지급청구서 없이 이 예금을 예금주의 은행에 대한 다음 각호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.

- 1. 각종이자, 지연배상금, 보증료, 수수료
- 2. 수입어음원금, 외화표시 내국신용장결제대금, 수출환어음 및 외화수표 부도대금
- 3. 기타 대체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무

### 제 8 조 이자

이 예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### 제 9 조 준용

수표용지교부, 수표금지급과 지급위탁취소, 지급자금부족시의 처리, 수표초 과지급과 일부지급거절, 수표금 지급과 면책 등, 해지, 해지후 처리는 "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" 제4조, 제6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.

## 제 4 장 외화정기예금

### 제 10조 계약기간

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연, 월단위로 정한다.

#### 제 11조 만기일 산정

기간을 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달의 예입일에 해당하는 날을 만기

일로 하되 마지막 달에 예입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경우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을 만기일로 한다.

#### 제 12 조 이자

- ① 이 예금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입금일 당시 약정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.
- ② 만기일후 청구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3/10을 만기 후 이율로 셈한 후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.
- ③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 청구할 때는 예금일로부터 지급 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하는 중도해지이율로 셈 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. 중도해지 이율은 예수기간에 따라 7일 미만은 무이자, 7일 이상 1월 미만은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1/100, 1월 이상 6월 미만 은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4/10, 6월 이상은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5/10로 한다.